



16146	ERVICES CO.	MINI
PINA!	용위원 ^办	WOICE

보도자료

• 미래창조 금융

•따뜻한 금융

• 튼튼한 금융

도 2016.3.15.(화) 석간부터 보도가능

배포 2016.3.14.(월)

책 임 자

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유 재 훈(02-2156-9961)

담 당 자

윤 우 근 사무관 (02-2156-9962)

제 목 :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

- '16.3.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, 금주 중으로 공포・발효될 전망
- 시행령·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, '16.4월말까지 입법완료 추진

1. 추진 배경

- ☐ '16.3.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(이하 '기촉법') 제정안이 '16.3.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
-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, **'16.3.18일 동법이 공포·시행**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
- o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**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**할 필요

2. 주요 내용

① 법률상 용어의 의미 명확화(令 제2조, 規程 제3조)

- 기**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***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
 - *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,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
- **상거래채권을 보호**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**신용공여**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^{*}
 - * 대출(한도거래약정의 경우 한도액 기준), 어음 및 채권매입,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

② 주채권은행 선정·변경 절차 마련(슈 제3조)

- o **舊기촉법**의 주채권은행 선정·변경 절차를 **유지**하되, **사적자치**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,
 -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, 주채권은행 변경 **사실은**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*
 - *(舊기촉법)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만을 통보

③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 구체화(슈 제4조)

- (횟 수) 매년 1회 정기평가, 필요시 수시평가
- o (평가배제대상) 기촉법·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,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
- o (이의제기)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, 기업은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

④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 마련(수 제6조)

- o (기 준) 기촉법 절차의 **효율적인 진행**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^{*}
 - * 최종적인 배제 여부는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다수결로 판단
- (절 차)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 채권자에게 배제 대상 목록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함

5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(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
- (엽의회 개최 시한)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
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(舊기촉법: 7일)^{*}
 - *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던 구기촉법과 달리 제정안에서는 '모든' 금융채권자가 참여하기 때문에, 협의회 개최에 보다 많은 시간 소요
- (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)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
 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,
 -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**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**을 제출할 것을 규정

o (경영평가위원회) 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,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

6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(슈 제10조)

-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할 때 준수해야 할 **사전통보** 기한(통상 5일, 주요안건 10일)을 규정하고,
- o 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, 非채권은행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 은행-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 명시 등

7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(숙 제11조)

○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(채권의 종류, 성격 등) 명문화

图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·운영 방법 등 구체화(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)

- ㅇ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구성 · 운영방법은 舊기촉법의 내용을 유지했으며,
- o 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」(이하 '협약') 상의 기구였던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 제정안에서 법상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, 협약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

9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숙 제16조 및 별표1)

ㅇ 기촉법 제35조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
3. 향후 계획

□ '16.3.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·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 추진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